

목 차

정 정 신 고 (보고)	1
주주총회소집공고.....	2
주주총회 소집공고.....	3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5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5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6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6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7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7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7
III. 경영참고사항	8
1. 사업의 개요.....	8
가. 업계의 현황	8
나. 회사의 현황	9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2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12
<input type="checkbox"/> 정관의 변경.....	17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24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24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25

정정 신고 (보고)

2014 년 2 월 27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 년 2 월 27 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주주총회 목적별 기재사항 중 이사의 선임	사외이사(임희택)의 생년월일 오기재	1958.12.10	1958.12.20

주주총회소집공고

2014 년 2 월 27 일

회 사 명 : 을촌화학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송낙정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전 화) 02-822-0022
(홈페이지) <http://www.youlch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김흥연
(전 화) 02-820-837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41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와 우리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41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3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농심관 이벤트 홀 (지하 1층)
(지하철7호선 보라매역 2번출구 약 300m)

3. 회의의 목적사항

가.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외부 감사인 선임보고

나.부의안건

제 1호의안 : 제 41기 (2013.1.1~ 20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참고)

제 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 및 사외이사)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송녹정 (사내이사)	1964.02.12	울촌화학 대표이사(현)	이사회	-	-
임희택 (사외이사)	1958.12.20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현)	이사회	-	-

제 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위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일의 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행사하게 됩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임희택 (출석률: 100%)
			찬반여부
1	2013.01.31	제4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찬성
2	2013.02.07	전자재료사업부문 설비증설 투자의 건 - 투자목적: 선진 생산기반 구축 및 성장동력 확보 - 투자금액: 총 230억원	찬성
3	2013.02.18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4	2013.03.11	경영고문 선임의 건	찬성
5	2013.03.15	퇴직임원 퇴직금 배율 및 상담역 선임의 건 -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 배율 결정 - 상담역 선임의 건	찬성
6	2013.03.25	한도대출 약정의 건 - 차입목적: 운전자금 - 차 입 처: 우리은행 신대방동 금융센터 - 차입금액: 일백오십억원(₩15,000,000,000)	찬성
7	2013.06.20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 - 취득목적: 전자재료사업부문의 지속성장 및 합리화 - 취득금액: 205억원	찬성
8	2013.07.23	2013년 임원(등기, 미등기), 임원대우 보수조정의 건	찬성
9	2013.07.25	제 3자를 위한 연대보증의 건 - 차입회사: YOUL CHON VINA PLASTIC - 차입금액: 이백만불(USD 2,000,000-) - 보증금액: 이백사십만불(USD 2,400,000-) - 보증기간: 차입일로부터 본 채무 상환시까지	찬성
10	2013.08.01	은행 여신에 관한 건 - 차입은행: (주)한국씨티은행 여의도 기업금융센터 - 차입종류: 회전한도 삼백만불(USD 3,000,000-) 개별거래 일백억원(₩ 10,000,000,000-) 용장개설 이백만불(USD 2,000,000-) - 차입기간: 채무상환시까지	신 찬성

11	2013.08.20	포승공장 임대의 건 - 임대건물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246 포승공장 지붕면적 8,000 제곱미터 - 임 차 인 : 농심엔지니어링 - 계약기간 :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5년	찬성
12	2013.09.16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 배율 결정의 건	찬성
13	2013.11.28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 배율 결정의 건 전문임원 선임의 건	찬성
14	2013.12.10	신규임원 선임의 건	찬성
15	2013.12.26	2013년도 임원 성과급 지급의 건 경영고문 선임의 건	찬성
16	2013.12.26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승인기간 : 2014.01.01~2014.12.31 - 거래회사 : (주)농심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2,000,000	42,000	42,000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보수한도액이며 지급액은 사외이사 1명에 대한 건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천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천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농심 (계열회사)	매출거래	2013.01.01~2013.12.31	180,329,041	40.92
	매입거래	2013.01.01~2013.12.31	120,961	0.03
	소계	2013.01.01~2013.12.31	180,450,002	40.95

※ 상기 비율은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며, 매출거래는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거래하며 실거래는 수시로 발생하고 위 거래금액은 2013년도 1년 간 실거래금액입니다.

※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매출총액기준 총 거래액 5% 이상을 기재하였습니다.

- 2013.12.31 매출액 : 440,653,000,349원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① 연포장사업부문

플라스틱 필름, 종이, 알루미늄 등에 그라비아 인쇄 및 접합, Slitting 등 가공 생산 공정을 거쳐 식품 종류인 라면, 스낵, 냉동식품, 레토르트 등과 생활용품류인 섬유 유연제, 세제류 및 화장품, 의약품, 산업용 포장지, 치약 등의 포장용 튜브 등 각종 포장지를 제조, 판매

② 필름사업부문

Polypropylene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용융 압출 및 냉각 과정을 거쳐 생산되며, 생산방식에 따라 OPP, CPP, Shrink Film으로 구분됨. 주 용도로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식품, 문구, 섬유 등의 제품 포장재와 일반 산업재인 이형용, 전사용으로 사용됨

③ 전자재료사업부문

광학 PET Film, 종이 등의 기초 소재에 Silicone, 점착제, 접착제 등을 박막으로 코팅하여 IT, 자동차, 건축산업 등에 사용되는 광학 Film류, 보호 Film류, 이형 Film류 생산과 휴대폰의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포장하는 Cell Pouch 등을 생산 및 판매

④ 골판지사업부문

원지를 투입하여 콜게이트 공정을 통해 생산된 골판지 원단에 인쇄, 타발 가공을 하여 골판지 상자를 생산한 후 라면, 스낵 및 기타 상품의 외 포장 등의 용도로 판매

2) 산업의 성장성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41기	40기	39기	38기	37기
연포장사업부	193,318	190,091	188,985	174,187	169,679
필름사업부	87,512	76,922	73,431	66,077	59,514
골판지사업부	39,480	41,635	40,787	35,492	31,071
전자재료사업부	120,343	97,054	73,432	66,927	48,236
총계	440,653	405,702	376,635	342,683	308,500

※ 사업부의 변화

- 제 41기 부터 소재사업부는 전자재료 사업부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 기존 소재사업부가 영위하던 튜브제품 사업영역은 41기 부터 연포장 사업부로 이관 되었습니다.
- 40기 이전의 실적은 변동된 사업부 내용에 따라 재 작성 되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포장산업은 식품산업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식품산업은 국내 소비경제의상황과 경기전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즉, 당사가 영위하는 포장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

를 지니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최근 포장산업 전반에 걸친 국제 경쟁력은 범용 제품의 가격경쟁력과 고부가 기능성 포장재의 설비 및 기술적 차별화와 포장재 관련 소재의 차별화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재의 제품 보호와 유통성의 기본적 기능은 국가 간, 관련 제조업체 간품질평준화로 인하여 핵심 경쟁요소가 아닌 포장재의 편의성, 기능적 차별성 및 친환경포장소재 및 선도유지 포장소재 개발 등과 그 제조 기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포장재 제조기업의 설비 개체와 품질 수준 업그레이드로 인하여 국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오랜 포장재 제조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당사의 BOPP등 포장소재의 제조 기술과 접목하여 고품질의 기능성 포장소재의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포장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납기와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원가혁신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미래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전자산업소재산업은 첨단 디스플레이 분야의 주요 소재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와 제조 생산 라인 운영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산업 수준은 TV는 물론 스마트폰 시장의 급 성장과 함께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생산능력과 최고수준의 품질로서 국내 경제성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재 역시 정밀가공과 섬세한 관리 기술을 요함은 물론 고도의 청결제조설비의 보유 및 운영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시장상황에 발맞춘 관련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신제품 개발에 대응하는 신속한 신제품개발 역량이 전자산업소재분야의 핵심 경쟁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 2012.07.30 제10회 무보증회사채 400억원 발행 (3년 만기)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특이사항 없음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2013년은 전년도 경제 악화의 여파가 상존하는 한 해였습니다. 국가간 상호 의존도는 더욱 커졌으며 이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또한 매우 커졌습니다. 이에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은 다른 국가에 바로 영향을 미쳐 신흥국들의 갑작스런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등 그 방향성을 짐작하기 힘든 한해였습니다. 다만 원유가 안정과 엔화의 평가절하로인해 당사의 원재로 가격은 상당부분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 되었으며 이 사실은 당사의 사상 최대규모의 매출액 달성에 일정부분 공헌하였습니다. 매출액의 점진적인 증가와 제반 비용의 감소에 힘 입어 이익수준이 보다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매출을 기록한 이 시점에서 율촌화학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가중

되는 국제정세 리스크가 상존해 있으며 침체되어 있는 소비재 시장은 비단 율촌화학 뿐만이 아닌 제조업 전체의 위기 상황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사는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R&D 역량 강화로 위기를 정면돌파하고 있습니다. 2013년 완공된 필름라인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력 확보에 전력투구 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 사업부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며 매 분기 매출액 신장을 주도하며 율촌화학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물론 연포장과 골판지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율촌화학의 Cash Cow 역할을 해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활동 성과로 2013년 율촌화학의 영업실적은 전년대비 8.6% 성장한 4,406억의 매출과 274억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올해 율촌화학은 신 성장 동력과 기존 사업들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을 추구하는 한 해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014년 율촌화학은 "虎視牛步"를 경영지침으로 정하였습니다. 성장이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 율촌화학은 신중한 발걸음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시장 선도기업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의 연포장, 필름, 골판지등 포장재 및 포장관련 소재사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주)농심을 비롯한 국내 대표 우량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시장점유율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형지, 점착소재등 전자산업소재 역시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국내 관련 업계에서 상위권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관련산업 분야는 그 소재의 종류와 분야가 다양하고 벤더를 통한 납품이 이루어져 최종 매출처를 산정하기가 복잡한 상황 등으로 인해 정확한 국내 시장점유율을 추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 시장의 특성

- 연포장 시장

연포장 시장은 그 소재와 재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식품 시장은 물론이고 건축, 의료, 전기, 전자 등 폭 넓은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재의 확대가 곧 연포장 수요 확대로 연결되는 만큼, 경기 회복에 따라 사업 성장성의 기대치 역시 높아지는 사업부문입니다. 제품에 따라 계절적, 지리적 소비 트렌드가 명확해지는 부분이 산업 특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웰빙 추세에 따른 친환경 제품의 사회적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추구해 오던 포장 경량화, 슬림화에 더하여 환경호르몬 등의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친환경 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고 기술 개발 대비 품질평준화가 빠른 산업특성으로 인해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가격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율촌화학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 수준을 확립하고 고 차원의 제품 개발을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Film 시장

BOPP, CPP, 수축필름은 그 우수한 인쇄성과 가공 용이성으로 인해 연포장재의 대표적 소재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런 이유로 필름 수요는 연포장 시장의 수급 특성에 비례합니다. 또한 Film의 주요 원재료인 P.P Resin은 국제 유가변동과 국제수급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Film 시장은 기존에 영위하던 연포장 등의 포장재 관련 시장 뿐 아니라 산업 소재용으로 그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 산업부문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시장 발

전추세를 보이는만큼, 국내 수요역시 가파르게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설비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신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전자산업소재

이제 전자 디바이스에서 디스플레이는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장 트렌드에 발 맞추어 디스플레이 가공, 유통에 들어가는 필름소재 시장 역시 비약적인 수요 확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과 필름시장은 동반 성장하는 시장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고품질, 첨단 스펙을 요구하는 전자산업소재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고정밀, 무결점의 양산품질 요구와 성장 트렌드를 반영한 빠른 신제품 개발이 반드시 요구되는 기술적 특징으로 인해 시장의 기술적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제품 라이프 사이클은 짧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인지하고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R&D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개발역량 제고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 설비 및 생산인력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골판지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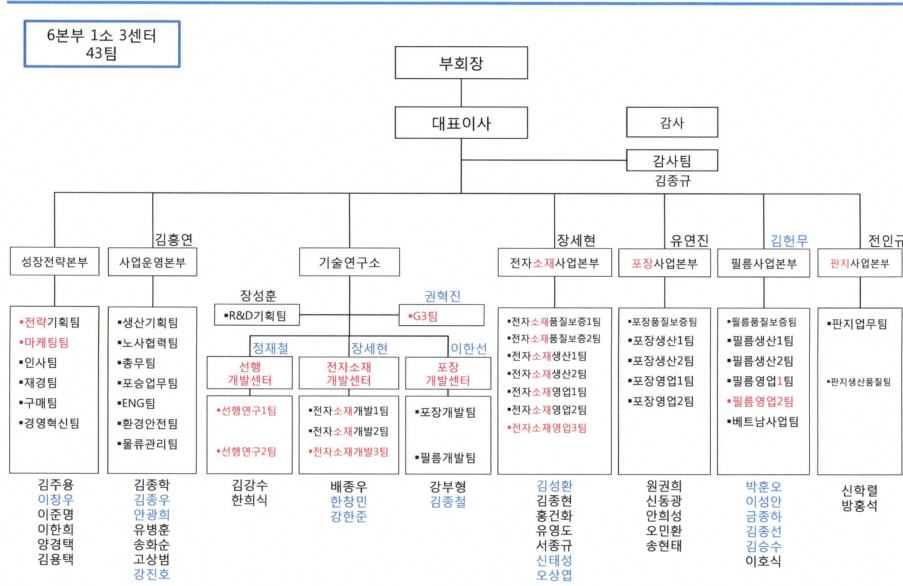
소셜커머스 및 인터넷 쇼핑 확대로 인해 골판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웰빙 추세와 1인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사회 추세로 인해 식음료 제품의 소분 판매가 대폭 확대 된 바, 이 역시 골판지 수요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골판지 시장은 높은 원재료 비율로인해 국제 원지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부피 대비 낮은 마진율로 인해 판매 지역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골판지에대한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기능성 제품 개발을 진행 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판지 관련 산업 수요증가에 대응해 나갈 것 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영업개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41 기 2013. 12. 31 현재

제 40 기 2012.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자산		
유동자산	197,513,074,889	177,921,635,936
현금 및 현금성자산	3,886,571,135	4,337,438,189
단기금융상품	9,180,000,000	10,590,000,000
매출채권	126,466,289,560	117,010,764,878
기타채권	2,789,185,780	2,783,276,932

기타유동금융자산	12,680,000	10,105,000
재고자산	52,536,156,235	40,234,738,091
기타유동자산	2,642,192,179	2,955,312,846
비유동자산	325,354,457,997	266,685,381,965
장기금융상품	1,026,000,000	906,000,000
기타채권	8,885,035,070	9,108,902,33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44,035,000	620,303,536
유형자산	307,357,068,193	248,100,238,188
무형자산	7,243,481,755	7,491,370,786
공동지배기업투자	198,837,979	458,567,125
자산총계	522,867,532,886	444,607,017,901
부채		
유동부채	143,869,758,309	81,586,322,184
매입채무	56,446,714,887	57,469,785,430
기타채무	13,525,616,061	12,556,960,456
단기차입금	68,363,872,000	8,399,264,000
당기법인세부채	4,262,839,497	2,367,050,111
기타유동부채	1,270,715,864	793,262,187
비유동부채	60,098,157,859	58,850,580,915
사채	39,899,827,782	39,836,561,118
확정급여부채	915,448,447	2,341,489,075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3,778,926,501	3,927,617,647
이연법인세부채	15,503,955,129	12,744,913,075
부채총계	203,967,916,168	140,436,903,099
자본		
자본금	14,776,380,000	14,776,380,000
자본잉여금	9,405,843,440	9,405,843,44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56,475,060)	(922,733,605)
이익잉여금	295,673,868,338	280,910,624,967
자본총계	318,899,616,718	304,170,114,802
자본과 부채총계	522,867,532,886	444,607,017,901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41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제 40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	--------	--------

매출액	440,653,000,349	405,702,110,707
매출원가	(373,892,676,415)	(348,037,877,525)
매출총이익	66,760,323,934	57,664,233,182
판매비와 관리비	(29,967,974,615)	(30,247,137,748)
영업이익	36,792,349,319	27,417,095,434
금융수익	711,611,473	970,390,727
금융비용	(1,570,414,034)	(306,574,689)
공동지배기업투자손익	(225,987,691)	(420,023,323)
기타영업외수익	2,766,070,345	2,728,198,982
기타영업외비용	(1,602,200,132)	(2,102,108,57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6,871,429,280	28,286,978,552
법인세비용	(9,381,274,602)	(5,680,678,181)
당기순이익	27,490,154,678	22,606,300,371
기타포괄손익	(360,652,762)	(374,170,144)
지분법자본변동	(33,741,455)	(114,801,332)
보험수리적손익	(326,911,307)	(259,368,812)
총포괄손익	27,129,501,916	22,232,130,227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1,108	91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41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제 40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28,077,406,991	24,314,163,62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14,163,620	1,967,232,061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
3. 당기순이익	27,490,154,678	22,606,300,371
4. 보험수리적손실	(326,911,307)	(259,368,812)
II.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1,000,000,000	1,000,000,000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1,000,000,000	1,000,000,000
합 계	29,077,406,991	25,314,163,620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28,400,000,000	24,400,000,000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3,000,000,000
2. 배당금	12,400,000,000	12,400,000,000

가.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당기:500원(100%) 전기:500원(100%)	12,400,000,000	12,400,000,000
3. 임의적립금	16,000,000,000	9,000,000,000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77,406,991	914,163,620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41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제 40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2012.01.01 (기초자본)	14,776,380,000	9,405,843,440	(807,932,273)	270,963,693,408	294,337,984,575
당기순이익	-	-	-	22,606,300,371	22,606,300,371
기타포괄손익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114,801,332)	-	(114,801,332)
보험수리적손실	-	-	-	(259,368,812)	(259,368,812)
총포괄손익	-	-	(114,801,332)	22,346,931,559	22,232,130,227
연차배당	-	-	-	(12,400,000,000)	(12,400,000,000)
2012.12.31 (기말자본)	14,776,380,000	9,405,843,440	(922,733,605)	280,910,624,967	304,170,114,802
2013.01.01 (기초자본)	14,776,380,000	9,405,843,440	(922,733,605)	280,910,624,967	304,170,114,802
당기순이익	-	-	-	27,490,154,678	27,490,154,678
기타포괄손익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33,741,455)	-	(33,741,455)
보험수리적손익	-	-	-	(326,911,307)	(326,911,307)
총포괄손익	-	-	(33,741,455)	27,163,243,371	27,129,501,916
연차배당	-	-	-	(12,400,000,000)	(12,400,000,000)
2013.12.31 (기말자본)	14,776,380,000	9,405,843,440	(956,475,060)	295,673,868,338	318,899,616,718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41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제 40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098,078,461	40,898,371,182
당기순이익	27,490,154,678	22,606,300,371
비현금항목의 조정	35,911,571,051	30,801,171,823

운전자본의 조정	(29,182,123,628)	(5,893,013,658)
이자수취	768,733,508	934,547,724
이자지급	(2,281,514,087)	(536,545,851)
배당금수취	13,330,000	26,660,000
법인세지급	(4,622,073,061)	(7,040,749,22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6,030,582,343)	(64,706,371,874)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450,000,000	28,03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0,105,000	5,610,000
기타채권의 감소	231,684,690	7,526,800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
유형자산의 처분	71,516,519	64,757,728
무형자산의 처분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40,000,000)	(28,03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20,000,000)	(18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36,411,464)	(36,033,536)
기타채권의 증가	(7,817,430)	(1,930,276,780)
유형자산의 취득	(76,756,294,178)	(62,414,776,940)
무형자산의 취득	(833,365,480)	(223,179,146)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7,663,266,664	25,588,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151,000,000,000	68,977,800,000
사채의 발행	63,266,664	39,810,200,000
배당금의 지급	(12,400,000,000)	(12,4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91,000,000,000)	(70,8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69,237,218)	1,779,999,308
현금및현금성자산 환율변동효과	(181,629,836)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337,438,189	2,557,438,881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886,571,135	4,337,438,189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제 41기	제 40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	500
당기순이익 (백만원)		27,490	22,606
주당순이익 (원)		1,108	912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12,400	12,400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현금배당성향 (%)		45.10	54.85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4.1	5.8

	우선주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우선주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500	500
	우선주	-	-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우선주	-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비고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비고
--------	--------	----

<p><u>제10조(신주인수권)</u> <u>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u></p>	<p>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p>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p>	<p>조명변경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6 제 1항</p>
<p><u>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 	<p>자본시장법 제 165조의6 제 4항</p>

<p>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삭제></p>	
<p>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삭제></p>	
<p>6.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③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p>	<p>자본시장법 제 165조의9</p>
<p>④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량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p>	<p>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자본시장법 제 165조의6 제 2항</p>
<p><신설></p>	<p>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p>	<p>단주 관련 내용 분리</p>
<p><신설></p>	<p>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p>	

<p>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p> <p>①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p> <p>②~⑤ <생략></p> <p>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u>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u></p> <p>⑦~⑧ <생략></p> <p>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p> <p>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①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p> <p>②~⑤ <현행과 동일></p> <p>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⑦~⑧ <현행과 동일></p> <p>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p> <p>①<현행과 동일></p> <p>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p>	<p>자본시장법 제 165조의6 제 3항</p> <p>상법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제9조→ 제30조)</p> <p>상법시행령 제 30조 ⑤</p> <p>조명변경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10 제1항</p>
---	--	---

<p><u>2. 경영상 필요로 관련법령에 의한 외국 인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u></p>	<p>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 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 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 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삭제></p>	
<p><u>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 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 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삭제></p>	
<p><u>4.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u></p>	<p><삭제></p>	
<p><u>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삭제></p>	
<p><u>6.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u></p>	<p><삭제></p>	
<p><u><신설></u></p>	<p>②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 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 를 배정하여야 한다.</p> <p>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 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 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배정하는 방 식</p> <p>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 정 다수인에게 사채를배정받을 기회를 부 여하는 방식</p> <p>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 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 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③<현행과 동일> ④<현행과 동일></p>	<p>자본시장법제 165조의 10 제1항</p>

<p>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⑤<생략></p> <p><u>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u></p> <p>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 결의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u>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u>2. 경영상 필요로 관련법령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u>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u>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u>5.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u>6.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u></p> <p><신설></p>	<p>⑤<현행과 동일> ⑥<현행과 동일></p> <p>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배정)</p> <p>① <현행과 동일></p> <p>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②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p>	<p>항번호 변경 항번호 변경 항번호 변경 항번호 변경</p> <p>조명변경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10 제1항</p>
---	--	---

<p>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⑤<생략></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u>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3항, 제14조, 제35조 제3항 및 제4항 제7항, 제36조, 제38조 제1항, 제43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u></p> <p><신설> . . . <신설> . . . <신설></p>	<p>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배정하는 방식</p> <p>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③<현행과 동일> ④<현행과 동일> ⑤<현행과 동일> ⑥<현행과 동일></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u>2014년 3월 14일부터</u> 시행한다. <단서삭제></p> <p>제2조(적용법령)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p> <p>제3조(기발행주식에 대한 경과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발행한도는 이 정관 시행일 현재 기 발행된 주식의 수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계산한다 .</p> <p>제4조(기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경과규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발</p>	<p>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10 제 1항</p> <p>항번호 변경 항번호 변경 항번호 변경 항번호 변경</p>
--	--	---

	행한도는 이 정관 시행일 현재 기 발행된 사채의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계산한다.	
--	--	--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송녹정	1964.02.12	사내이사	-	이사회
임희택	1958.12.20	사외이사	-	이사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송녹정	울촌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현)	울촌화학 주식회사 동경사무소장	-
임희택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현)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현)	-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3 (1)	3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00,000,000원	2,0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350,000,000원	35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